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3년 인권보고서

미주(尾註) 참조

### EXECUTIVE SUMMAR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김씨 일가에 의해 60여 년간 통치되는 독재국가이다. 2012년 7월에 김정은은 '공화국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고(故) 김일성 주석이 "영구주석"으로 추대되어 있다. 2009년 3월에 실시된 국가선거는 자유선거 또는 공정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하여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였다. 보위기관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북한 주민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표현·언론·집회·결사·종교·이주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 등 다방면에서 주민생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산재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 등 수감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상황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사법외적 처형, 실종, 임의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사례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일부 탈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처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은 면책은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이다.

###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 a.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북한 정부가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수없이 많다.

당해 연도 중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지속되었으나, 이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하 남한 또는 한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2012년에 공개 처형을 목격하거나 관련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탈북자가 여섯 명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제인권연맹(IFHR)은 연례 간행물인 「북한의 사형제도(*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에서 2012년에 최소 15건의 처형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8월에 남한 언론은 과거 김정은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포함한 12명의 음악가가 구금된 지 3일만에 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두 개의 관현악단 출신으로, 모든 단원이 강제로 처형 장면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북한 정부는 이들이 음란물을 제작·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 탈북자가 이를 확인하였다.

남한의 신문인 중앙일보의 11월 보도에 의하면, 외국 TV 드라마 시청 및 매춘 등의 범죄 혐의로 80명이 공개 처형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3일에 7개 도시에서 집단처형이 이루어졌다. 해당 보도에 의하면 북한당국이 원산의 한 경기장에 10,000명의 주민을 집결시켜놓고 8명이 총살당하는 현장을 지켜보도록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

고 한다.

12월 8일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최측근 고문이었던 장성택이 북한 노동당 확대회의에서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은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되었다. 북한 정부는 이로부터 4일 후인 12월 12일에 “특별 군사 재판소”가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반역, 종파행위, 부정부패와 주색을 비롯한 일련의 범죄 혐의로 즉각 처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남한 및 기타 언론 매체는 장성택의 측근들이 공개 처형되었으며, 장성택과 측근의 가족들이 검거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정부세력, 송환 탈북자 및 범죄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북한 법률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행위, “기만적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법률은 절도 또는 군사시설이나 국유재산 파손, 사기, 납치, 포르노물 배포, 인신매매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비정부기구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 b. 실종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5월에 아베 내각의 관방 고문이 한 차례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일본인 피랍 의혹사태들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다.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기타 국가의 국민들도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에서 피랍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외국인 피랍 사건 개입설을 계속 부인해왔다. 한국의 통일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자국 민간인 약 517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은 민간인 2만 명이 한국전 중에 북한에 의해 납북된 건으로 추정한다.

##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의 목격담과 당해 연도 중에 발표된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수용소 관계자들이 고문을 자행한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비바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는 등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어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어야 하는 좁은 “형실”에 최대 수주일간 감금,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쓰러질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기 등 다양한 고문과 학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고문, 질병, 기아, 비바람에 대한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보고해왔다.

통일연구원의 「2013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인권위원회의 2012 보고서 「강제노동수용소: 제2판(*Hidden Gulag: Second Edition*)」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이 최근 2011년까지도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명령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다. 상기 백서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출산을 하더라도 교도관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다. 또한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착취한 경우도 있다고 상기 백서는 전했다.

강제노동수용소의 교화소 피구금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강요당했다(제7.b절 참조).

###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여러 유형의 형무소와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는 별도의 수용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는 6개 유형의 수용시설이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교정 및 재교육 센터인 교화소, 노동 개혁 센터인 교양소, 중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모이는 집결소, 노동 교육 센터인 노동단련대, 그리고 심문 시설이나 교도소를 뜻하는 구류장 혹은 감옥 바로 그것이다.

국가안전보위부(MSS)가 관리소를 관리하고,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MPS)는 여타 수용소들을 관리한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관리소 당 5천~5만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남도 개천(14호)(약 5만명 수용), 함경남도 요덕(15호)(약 10,500명 수용), 함경북도 화성(16호)(약 15,000명 수용), 청진(25호)(약 5천명 수용), 개천의 이전 시설(과거에 북창에 위치했던 18호 관리소)(약 2천~5천명 수용)의 5개 관리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22호 관리소의 경우, 가로 25마일·세로 31 마일의 규모로 추정된다.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수용소 내의 변화 해석(*North Korea's Hidden Gulag: Interpreting Changes in the Prison Camps*)」이라는 북한인권위원회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었다고 한다.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22호 관리소의 위성사진 분석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수용소가 파괴되었고, 남은 감시 초소와 탑은 버려졌으며, 수감자와 교도관들은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탈북자들은 22호 관리소의 폐쇄 이전에 8,000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여타 수용소로 이송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권 운동가들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이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기아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거의 2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사면위원회의 3월 보고서 역시 14호 관리소 인근의 보안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주목하였다.

완전통제구역들은 피수용자들이 무기한 감금되는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와 피구금자들이 풀려나기도 하는 “사상개조 구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동수용소(*Hidden Gulag*)」에 따르면 2009년 이래 요덕 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보고에 의하면,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교화소로 이송된다. 한편, 정부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되는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한다.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체포되면 다른 가족들도 구금되는 경우도 많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형무소와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조직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곳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처형 목격담을 공개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대 수천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및 일반 범죄자가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시설 현황:** 형무소와 수용시설의 총 수감 인원은 8만~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도 통일연구원 백서는 현재 5개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수용인원 감소는 혹독한 제반 여건상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일 뿐 북한 정부의 정책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182~490개 수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 및 청소년 수감 인원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사례보고에 따르면 일부 형무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별도로 수감되고 종종 성적학대의 대상이 된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징벌집행시설로 이송된 정치범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고문을 당한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노동단련대 수감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해당 시설 수감자의 대다수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이들이라고 보고하였다.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해당 형사사건은 기각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의한 범죄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이 적용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입수할 수 없었다. 당국은 종종 청소년들을 가족과 함께 구금하고 수용소에서 고문하고 학대하였다.

**행정:**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과거 수년 간 기독교 수감자들은 신앙이 적발될 경우 더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종교의식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법당국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비인간적 환경에 관한 신뢰성 있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기록관리 절차나 비폭력범들에 대한 투옥 대체수단에 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다.

독립적 감시: 북한 정부가 수감 및 구금 환경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도 없었다. 북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이나 형무소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유엔인권조사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여타 인권 조사관들의 형무소 및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0년에 발행된 「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 통찰(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이하 「전환의 목격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구금, 체포, 기소 및 석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으로는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있다. 보위기관에는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보위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는 없다.

####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기소 및 재판 중의 구금 기간 단축, 영장에 의한 체포, 자백강요에 의한 증거 수집 금지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위기관원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인민보안부는 2008년부터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대 2개월간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기타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제도는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석제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피구금자에게 변호인 제공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불법체포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임의체포: 2012년 5월에 유엔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정부는 피구금자인 신숙자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당국이 남편 오길남 씨가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신숙자 씨를 요덕 수용소에 구금했다고 주장한다.

#### e.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엄격히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재판 절차

정치적 사건의 경우 인민보안부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재판이 열릴 경우 정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가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사전심리”나 예비 심문을 수행하지만 재판은 사법제도에 의해 이뤄진다. 일부 탈북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도 재판을 수행한다고 증언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강제노동수용소(*Hidden Gulag*)」에 의하면, 수용소 수감자의 대부분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변호사의 도움도 못 받고 수감되었다고 한다. 「전환의 목격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감금되었던 102명의 응답자 중 13%만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는지는 알 수 없다.

## 정치범 및 피구금자

정치범 및 피구금자 총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통일연구원의 2013년 백서에 따르면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 5곳에 수용되어 있다. 정치범들은 다른 피구금자들과 별도로 수용되어 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기타 재소자 및 피구금자들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수용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보고된 정치적 범죄로는 구권 화폐의 소각이나 정부의 화폐 개혁에 관한 비판 등이 있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구권 화폐의 소각, 정부의 화폐 개혁에 관한 비판,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북한 헌법 제69조는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존중되지 않는다고 한다.

###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북한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 정보원 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공동체 전체가 보안 검열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사법부 허가 없이 가택수색을 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북한 유일의 3G 이동통신망 사업자인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에 의하면, 북한 내부 이동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추정 사용자 수가 5월까지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감시한다. 내국인용 시스템은 외국인용 시스템과 분리되어, 국제전화가 불가능하다.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비인가 중국산 휴대전화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을 체포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간첩혐의 또는 기타 범죄혐의로 혹독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1월에는 북한이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 및 국제 전화를 목적으로 이동전화 반입 및 3G 통신망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5월에 휴먼라이즈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산 휴대전화의 가용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거나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는 최근 탈북자들의 새로운 증언을 보고했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핵심 통치기구이다. 당원자격은 사회적·가족 배경에 좌우되며 사회적 이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특정 상점, 결혼상대, 식량배급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북한인권위원회의 2012년 보고서 「성분: 북한 사회분류시스템(Songbun: Marked for Life,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정부에 대한 인지된 충성심을 기준으로 51개 성분 부류로 분류한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주민의 28%가 “핵심” 계층, 45%가 “중요” 계층, 27%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추정했다.

통일연구원의 2013년 백서 등 다수의 독립적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연좌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수감된다. 최고 3대에 걸쳐 연좌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에 의하면 가족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

##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 당한 이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며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판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인쇄매체,

방송매체, 책 출판을 철저히 통제한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AP통신은 종합지국을 평양에서 운영한다. AP통신 기자들은 북한에 상주하지 않았다.

**폭력 및 괴롭힘:** 북한 언론인들은 기사거리를 조사하거나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 당국은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인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부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검열 혹은 언론보도내용 제약:**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는 비슷하게 개조된다. 엘리트 주민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은 위성을 통해 국제 TV 방송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보드키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센터가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은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e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정부 직원들은 때때로 인터넷에서 e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술작품도 통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학술여행을 철저히 제한한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에 기여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상적 교화는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계속해서 차단하려고 한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외국의 DVD, VCD, CD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고 전한다.

인터미디어(InterMedia)가 2012년에 발표한 「북한의 언론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집(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에 따르면 설문조사나 인터뷰 대상 탈북자의 48%가 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 DVD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는 없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안은 밀수 DVD를 찾기 위한 가택수색 권한을 부여 받았다.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 공안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

##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c. 종교의 자유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j/drl/irf/rpt](http://www.state.gov/j/drl/irf/rpt))를 참조한다.

##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및 무국적자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국내 여행을 면밀히 통제하였다.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의 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식량 배급,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대한 거주 또는 진입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관리들은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및 학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단기 취업기회 또는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발급된다.

강제이주: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도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이민 및 본국 송환: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국경 지역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제한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뇌물을 받는 대가로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지역에 불법 거주하는 북한인 수는 최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8월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중국당국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가 되는 두만강을 따라 수 마일에 달하는 철조망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남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공식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불법월경 혐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 법률은 망명은 물론, 정치적 망명을 목적으로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탈북자 또는 망명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 등 외국인과 많은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의 과거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때때로 사형을 포함한 중형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당해 연도 중에 북한 정부는 모든 월경자를 형무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한다는 정책을 계속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자들의 가족은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다.

5월 27일에는 15세에서 23세의 망명 신청자 9인이 라오스에서 체포되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송환 과정에 북한 관리가 동행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6월 5일에 망명 신청자 9인의 송환을 확인한 바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1,181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했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숫자는 1,199명이다. 언론과 비정부기구는 이와 같은 2012년 및 2013년의 감소(2011년에 정착한 탈북자 수의 약 60%에 불과) 원인을 북한의 국경통제 강화에서 찾았다.

## 난민 보호

망명 접근권: 북한 법률은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

###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을 민주적 방법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것은 2009년이다.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고, 선거 결과도 사실상 이전 선거 결과와 동일하였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측 후보자 찬성율이 100%에 육박하였다.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7월 선거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정당: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의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 2009년 선거에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6%이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이지만, 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정부 내의 소수대표제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 제4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북한 법률에 관료의 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가 해당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망을 피한 관료들의 부패 행위가 얼마나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그리고 보위기관 내에도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진다.

부패: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다수의 부서와 당 기관이 부패 문제 처리를 담당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정보는 없다.

재산 공개: 정부 관료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 정부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은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인권연구소, 변호사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당해 연도 중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인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 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북한 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인권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조약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마저 거부하였다.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남한 및 기타 국가 방문을 비롯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9월에는 인권 이사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 정부는 이사회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조사단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제로 국민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 여성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5월에 발간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인권 실태」 보고서는 2010년 12월에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으로 인한 주요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동 법이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속 시행법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 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률의 세부내역이나 그 실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상대로 교도관에 의한 강간과 강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북한 정부가 강간,

가정폭력, 기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보는 없다.

성희롱: 탈북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성희롱”은 정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1946년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

출산권: 북한에서 허용되는 출산권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2002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의하면, “각 가정 별로 법률, 규정, 도덕 및 관습에 따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여성은 자신의 희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터울을 결정한다”고 한다. 독립적 정보출처를 통하여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엔이 2012년도에 발행한 「북한의 수요 및 지원 개관(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in DPRK)」 보고서는 모성사망률이 출생아 10만명당 85명 내지 25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및 세계보건기구의 기술지원을 받아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2012 영양실태조사의 최종결과에 의하면, 모성사망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아 10만명당 85명에서 76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엔아동기금은 악화일로에 있는 의료체계·의약품 부족·응급의료 서비스가 높은 모성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의 31%가 모성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제출된 2009년도 “국가인권보고서”에서 여성의 98%가 출산 중에 전문적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유엔의 2012년도 「북한의 수요 및 지원 개관」 보고서에 따르면, 매월 출산의 68%가 ‘리(마을)’ 수준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들 시설 중 약 42%는 산모용 심폐소생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36%는 신생아용 심폐소생장비가 없었다. 통일연구원의 탈북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가정의 제도는 “쓸모가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연구원의 2013년도 백서 역시 놀라운 수준의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후 수용소 수감형을 받은 임신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차별은 임금차별, 승진 및 배정된 업무 유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언론과 싱크탱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근직을 부여 받을 확률은 낮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외부 영역에서 일할 기회는 더 많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2013년도 백서에 의하면, 뇌물 없이는 이혼이 승인되지 않는다.

## 아동

출생 등록: 북한 시민권은 부모를 통해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획득하기도 한다.

교육: 법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이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 내 아동들은 동일한 교과과정이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5학년부터 매주 수 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전 아동이 학교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의료혜택: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아동 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 형법 제153조는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자는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해선 보고된 바 없다.

강제결혼 및 조혼: 가족법은 혼인적령이 남성의 경우 18세, 여성의 경우 17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착취: 탈북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한 내 아동의 성적착취에 관한 정보를 거의 입수할 수 없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http://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유랑아동: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 수의 노숙 아동이 존재하는데 이들 다수가 고아로서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이라고 한다.

보호시설 아동: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서 재소자 간의 “보상결혼”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들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아동들은 하루 최장 12시간 동안 강제노동을 하여야 하고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관리소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면 고문을 당했다.

국제아동유괴: 북한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당사국이 아니다.

## 반 유대주의

유대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 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 인신매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http://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 장애인

북한은 7월 3일에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서명했지만 이를 비준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통일연구원의 2013년도 백서는 장애인이 북한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3년도에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직장 등에서 용인되고 있다. 우대를 받는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국내의 기타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수용소 내에 격리되거나, 강제 불임시술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장애인들은 공적 생활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전국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3년에 발간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을 불문하고) 장애아 출산은 “저주”로 간주되며 의사들은 장애인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 보호 시스템을 갖춘 복지센터가 없다고 한다.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이 유기된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8.3 병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화학적·생물학적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인용하였다.

유엔아동기금은 고도의 영양실조는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3월에 발표된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지원을 받아 북한 중앙통계국(CBS)이 실시한) 2012년도 국민영양조사의 최종결과에 따르면 475,868 명의 아동(28%)이 성장지연을 겪고 있고 68,225 명의 아동(4%)이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보고서는 영양지표를 포함하는 전국적 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2009년 이후 아동의 심각한 영양 상태가 다소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동성애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 기타 사회적 폭력 또는 차별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 제7절. 노동자의 권리

###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 파업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유일한 노동단체가 존재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불법 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업무 배정 및 임금 결정 등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사업 및 외국인소유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 법률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은 노조활동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법률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나진-선봉 지역에는 경제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적용된다. 북한 정부가 이 경제특구의 노동자들을 선발하였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 지역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남북한 간에 협의된 노동문제를 다루는 특별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기 규정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 **b.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 아동노동(제7절. c 참조)을 포함한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때때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전통적으로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 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재교육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 암기가 포함된다.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경제계획 실시 기간 중에 공장 및 농장들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수선 및 수리용 물품 구입을 위해 곡물과 현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형법에 따라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벽돌 제조, 시멘트 제조, 채탄, 채금, 철 생산, 농업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당국이 연초에 일부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캠퍼스 미화 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http://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 **c.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북한은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은 아동 강제노동을 금지하지만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 등의 특별 과제를 완수를 지원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 d. 최저 근로 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9월과 10월에 특정 광업·철강 회사 등 중공업 부문 일부 기업과 11월에 섬유·의류 부문 일부 기업에서 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것에 주목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월급은 3,000-4,000원(0.30-0.40달러)에서 300,000원(30달러)으로 인상되었는데, 월급의 약 3분의 1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된다고 한다.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매주 안식일(일요일),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연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의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명시된 권리가 없다.

공휴일 대중집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휴가나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사 연습을 위해 근무시간에 예행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를 소속 작업반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식 또는 지하 경제에서 소득창출활동을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국영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 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하고는 이동의 자유를 향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 당국이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귀국 전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이곳에 온 노동자들이 당국으로부터 기만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당해 연도 중에 언론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산업연수 비자를 발급했다. 200~300달러의 월급 중에서 노동자들은 50달러 미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도와 혈연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신중히 선발한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한 4월까지 총 123개의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였고 약 5만 3천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였다. 북한과 한국은 9월에 개성공단의 운영 재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진입, 관세 및 통신 문제에 관하여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공단 근로자 후보명단을 제공하면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을 최종선발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주 선택권이 없다. 남북한간 협약에 따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보장공제액의 공제 이후 월 60.77 달러의 최저기본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개성공업지구 노동법에 따라, 임금은 미 달러화로 결정된다.)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노동자의 정확한 실수령 임금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상 북한 정부 관리 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총액의 약 70%라고 함)을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배급표”와 북한 원화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공식 환율로 환전한 북한 원화로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 개성공단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 **미주(尾註): 자료출처 관련 주의사항**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 정부 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내빈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또는 보고된 인권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입수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일부 보고들은 탈북자들의 탈북 시기와 인권상황의 기록이 가능한 비정부기구 또는 관리와의 접촉 시기 간의 시간차로 인하여 시의성이 없을 수 있다.